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803

발의연월일: 2022. 8. 8.

발 의 자:서삼석・이상헌・양정숙

김주영 • 이원택 • 오영환

이개호 · 서동용 · 김철민

고민정 · 정일영 의원

(119]

제안이유

최근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함께 기존 유인섬의 무인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섬으로 돌아와 농·어촌 생활을 유지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귀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무인도서의 지정이나 개발과 관련한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먼저 무인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무인도서 개발 시 무인도서로 간 주하는 거주요건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은 무인도 서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무인도서의 보전·관리와 도서주민의 공공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무인도서의 범위에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을 무인도서로 간주하는 요건을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1년 까지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단서).
- 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법률 제 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 마. 무인도서의 개발(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1년 동안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제11조제1항 전단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을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	1	
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		
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		
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		
을 말한다. <u>다만, 등대관리</u>	<u>다만, 다음 각 목에</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	
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무인도서로 본다.		
<u><신 설></u>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	
	<u>영</u>	
<u><신 설></u>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	
	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의 운영	
<u><신 설></u>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	
	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	
	<u>시 거주</u>	

<신 설>

<신 설>

<신 설>

2. ~ 4. (생략)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
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듣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후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무인도서의 개발(제16조
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
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1년 동안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
적의 수행
2. ~ 4. (현행과 같음)
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u>지정 또는 변경</u>
단 삭제>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기 개발
등) ① ~ ⑤ (현행과 집	달음)
6	
<u></u>	^문 , 항만
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